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4. 12. 21.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11월 15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11월 25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110회(제2차정례회) 제2차 위원회(2004년 12월 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가. 제정이유

- 근대화 산업의 중심지인 영등포의 위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영등포 건설을 위한 뉴타운사업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진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역균형발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안 제3조 내지 제4조)
- 뉴타운 및 균형발전 사업지구 지정요청(안 제5조 내지 제6조)
- 뉴타운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심의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함(안 제7조)
- 기타의 균형발전 사업지원(안 제9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사항(안 제11조 내지 제12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남식)

-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보면 우리구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균형발전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도화 함으로써 절차상 민주성을 확보하고 우리 구의 건전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의지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절차적 민주성의 보완, 행정, 재정상의 지원,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개발유도를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한 점에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사료되며
- 구시가지역인 우리구의 실정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의 적절한 조례제정으로 보이며, 조례제정의 형식에도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30 |
|----------|-----|

제출년월일 : 2004. 11. 15.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근대산업화의 중심지인 영등포의 위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영등포 건설을 위한 뉴타운사업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진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과 영등포구정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안 3조)
- 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점적인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뉴타운지구 또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서울시에 지정을 요청 (안 5조)
- 다.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외에 사업지구안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중 그 시설의 소유권이 구에 귀속되는 시설은 구가 비용을 부담 (안 8조)
- 라. 균형발전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 기타 보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안 10조)
- 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원,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 30인 이내로 구성함 (안 11, 12조)

3. 기 타

- 가. 관계 법규 : ① 지방자치법 제15조
②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③ 영등포구청장방침 제284호(2004.10.07)와 관련임
-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 다. 임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기간 : 2004. 10. 8 ~ 10. 27)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의 건전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균형발전사업”이라 함은 뉴타운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기타의 사업으로서 도시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재반사업을 말한다.
2. “뉴타운사업”이라 함은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반사업을 말하며, 신시가지형뉴타운사업, 도심형뉴타운사업, 주거중심형 뉴타운사업으로 구분한다.
3.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이라 함은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생활권중심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상업·유통·업무·정보산업 등의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재반사업을 말한다.
4. “사업지구”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기반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주차장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 2 장 계획수립 및 사업지원 등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①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지구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과 영등포구정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지구의 명칭·위치와 면적
2. 사업지구의 지정목적 및 사업의 시행기간
3.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4. 토지이용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5. 도로·공원·학교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기초조사) 구청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과 주변지역의 인구변동 추이
2. 사업지구안의 인구·토지이용·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에 관한 사항
3.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4.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지구지정 요청) 구청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점적인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뉴타운지구 또는 균형발전촉진지구(이하“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다.

제6조(지정요청대상지역) ①뉴타운지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지정 요청한다.

1. 도심형뉴타운은 도심 및 그 인근지역의 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거·상업·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유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주거중심형뉴타운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재개발이 필요하거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동일 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발할 경우 도시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축진지구의 지정요청대상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기본계획에 부도심·지역중심·지구중심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시기본시설이 취약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
2. 상업·업무기능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경우 주변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3. 기타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생활권 중심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뉴타운지구 및 지역균형발전축진지구지정 요청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개발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2. 개발계획의 적정성
3. 적극적인 사업시행과 주민의 추진의지
4. 권역별 지역간 형평성 등

제7조(지정심의에 따른 자문) 구청장은 사업지구를 지정요청 또는 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조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8조(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 사업지구안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본시설 중 그 시설의 소유권이 구에 귀속되는 시설은 구가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도시개발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 또는 관리자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기본시설은 그 시행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제9조(기타의 균형발전사업 지원)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타의 사업 중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2. 교육환경개선사업
3. 사업지구와 연결되는 도로사업
4. 물류시설 기능개선사업
5. 기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

제10조(재원의 확보) 균형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와 해당하는 사업의 사용용도에 적합한 경우 다음 기금 및 보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
2. 기타 보조금 등

제 3 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요청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균형발전축진지구 지정요청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균형발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원중 구의회의장이 추천한 자
2. 구 공무원
3. 도시계획,건축,교육,문화,교통,재정,환경,조경 등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수립에 참여한 민간전문가, 관련시민단체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로 구청장이 추천한 자

④제3항제1호의 구의회 의원 및 제2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⑧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지원센터)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별로 수립한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각 사업이 최종완료 될 때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집행 등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민간전문가(MA) 및 관련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지원센터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보 칙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